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도 시행계획

I

방송통신위원회 표준정책의 개요

1. 현황 및 문제점

- WTO 출범 후 국가간 기술무역 장벽 철폐로 선진국은 국제 표준 획득을 자국 기술의 국제적 확산 및 시장 확대 전략으로 활용
 - 특히, 방송통신분야는 국제표준 획득을 세계시장 선점전략으로 활용
 - *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에서는 차세대이동통신(4G), 방송, 미래네트워크, 그린ICT(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각국의 표준전쟁이 치열
 - * 세계 선진기업들은 핵심 분야 시장선점을 위해 포럼·컨소시엄 활동 주도
 - 최근 국제기구는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표준화 및 공공 표준화 확대
 - * ITU의 휴대전화 충전단자 표준 제정('11.6), 유럽·미국 등 선진국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사용자 친화적 방송통신 공공표준화 추진 강화
- 디지털 융합환경에서는 방송통신 기기, 서비스간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수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표준화 역할이 중요
 - 방송통신 기술의 진화 및 융·복합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전략적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한 부처간 협조·조정 필요

* 국제표준화기구에 대응하여 ITU는 방송통신위원회가, ISO/IEC는 지식경제부가 국가대표기관으로 업무 수행

□ 방송통신분야 국제표준화 주도를 위해서는 기술개발·특허·표준화 연계 강화 전략 필요

- 지금까지의 방송통신 국제표준화 성장은 질적 성장보다 양적 성장에 주력
- 방송통신 국제표준화의 질적 성장을 위해 방송통신 원천기술의 국제표준화, 방송통신서비스의 ICT 전후방 산업 견인, ICT 융합의 전체 산업 확산을 위한 전략 수립 필요

2. 추진목표

□ 최종목표 (중점추진방향)

- 방송통신분야 국내 원천기술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선점 및 적합성 평가체계 선진화
- 미래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및 스마트 생태계를 위한 표준화 체계로 확대
 - * 방송통신 표준화 대상 : 인터넷·이동통신('90년대) → 융합서비스·녹색성장·스마트서비스 ('10년대)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체계 개편 후 적합성평가제도의 선진화 및 국내 적합성 평가기관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 국내 민간표준화 역량 강화를 통한 방송통신 국제표준화 선도

- 국내 민간 단체표준화 역량 강화를 통한 표준의 시장적합성 제고 및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개발·보급 확대
- ICT국제표준전문가 지원, 전략 포럼 선정·지원 등을 통해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진출을 확대하고 우수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 연도별 추진목표

1-① 신성장 원천기술 표준개발 확대

- 2011년 - 그린 ICT 표준 제정 : 5종
 - 미래 방송통신서비스 표준개발 지원 : 18개
- 2012년 - 그린 ICT 표준화 추진 : 연 4종
 - 미래 방송통신서비스 표준개발 지원 : 21개
- 2013년 ~ 2015년
 - 그린 ICT 표준화 추진 : 연 4종
 - 미래 방송통신서비스 표준개발 지원 : 연 10여개

1-② 원천기술 국제표준 선점

- 2011년 - 국제표준전문가 선정·지원 : 275명
 - ITU 국가기고서 : 319건 제출, 306건 반영
 - ITU 등 국제회의 개최 : 4회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진출 : 120명
- 2012년 - 국제표준전문가 선정·지원 : 연 280명
 - ITU 국가기고서 : 300여건 제출·반영
 - ITU 등 국제회의 개최 : 연 1회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진출 : 122명

- 2013년 ~ 2015년
 - 국제표준전문가 선정·지원 : 연 280명
 - ITU 국가기고서 : 300여건 제출·반영
 - ITU 등 국제회의 개최 : 연 1회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진출 : 135명

1-③ R&D-표준화 연계 활성화

- 2011년 -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전략 수립 : 31개
- 2012년 -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전략 수립 : 연 30 여개
- 2013년 ~ 2015년
 -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전략 수립 : 연 30 여개

2-① 기업친화적 인증제도 개선

- 2011년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제도 선진화 제도 정비·운용
 - 정부간 상호인정협정 확대 : 3개국 협의 추진
- 2012년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제도 선진화 제도 정비·운용
 - 정부간 상호인정협정 확대 : 계속
- 2013년 ~ 2015년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제도 선진화 제도 정비·운용
 - 정부간 상호인정협정 확대 : 계속

2-② 사용자 편의형 표준지원

- 2011년 - 방송통신표준 정보 DB 입력 : 1,200건
 - 표준화 정보 보급 및 이메일링 서비스 : 52회
- 2012년 - 방송통신표준 정보 DB 입력 : 연 1,200건
 - 표준화 정보 보급 및 이메일링 서비스 : 연 50여회
- 2013년 ~ 2015년
 - 방송통신표준 정보 DB 입력 : 연 1,200건
 - 표준화 정보 보급 및 이메일링 서비스 : 연 50여회

3-① 생활공감형 · 서비스 표준화

- 2011년 - 생활공감형 방송통신표준(KCS) 제정 : 2종
- 2012년 - 생활공감형 방송통신표준(KCS) 제정 : 연 2종
- 2013년 ~ 2015년
 - 생활공감형 방송통신표준(KCS) 제정 : 연 2종

3-② 사회안전 · 보안 표준화

- 2011년 - 보안 분야 방송통신표준(KCS) 제정 : 4종
 - 전자파 안전기준 마련 : 1종
- 2012년 - 보안 분야 방송통신표준(KCS) 제정 : 연 4종
 - 전자파 안전기준 마련 : 연 1종
- 2013년 ~ 2015년
 - 보안 분야 방송통신표준(KCS) 제정 : 연 4종
 - 전자파 안전기준 마련 : 연 1종

3-③ 공공·행정 표준화

- 2011년 - 공공 분야 방송통신표준(KCS) 제정 : 1종
- 2012년 - 공공 분야 방송통신표준(KCS) 제정 : 연 1종
- 2013년 ~ 2015년
 - 공공 분야 방송통신표준(KCS) 제정 : 연 1종

4-① 선진형 표준체계 구현

- 2011년 - 방송통신표준(KCS) 제정 : 연 30종
- 2012년 - 방송통신표준(KCS) 제정 : 연 30종
- 2013년 ~ 2015년
 - 방송통신표준(KCS) 제정 : 연 30종

4-② 민간 표준참여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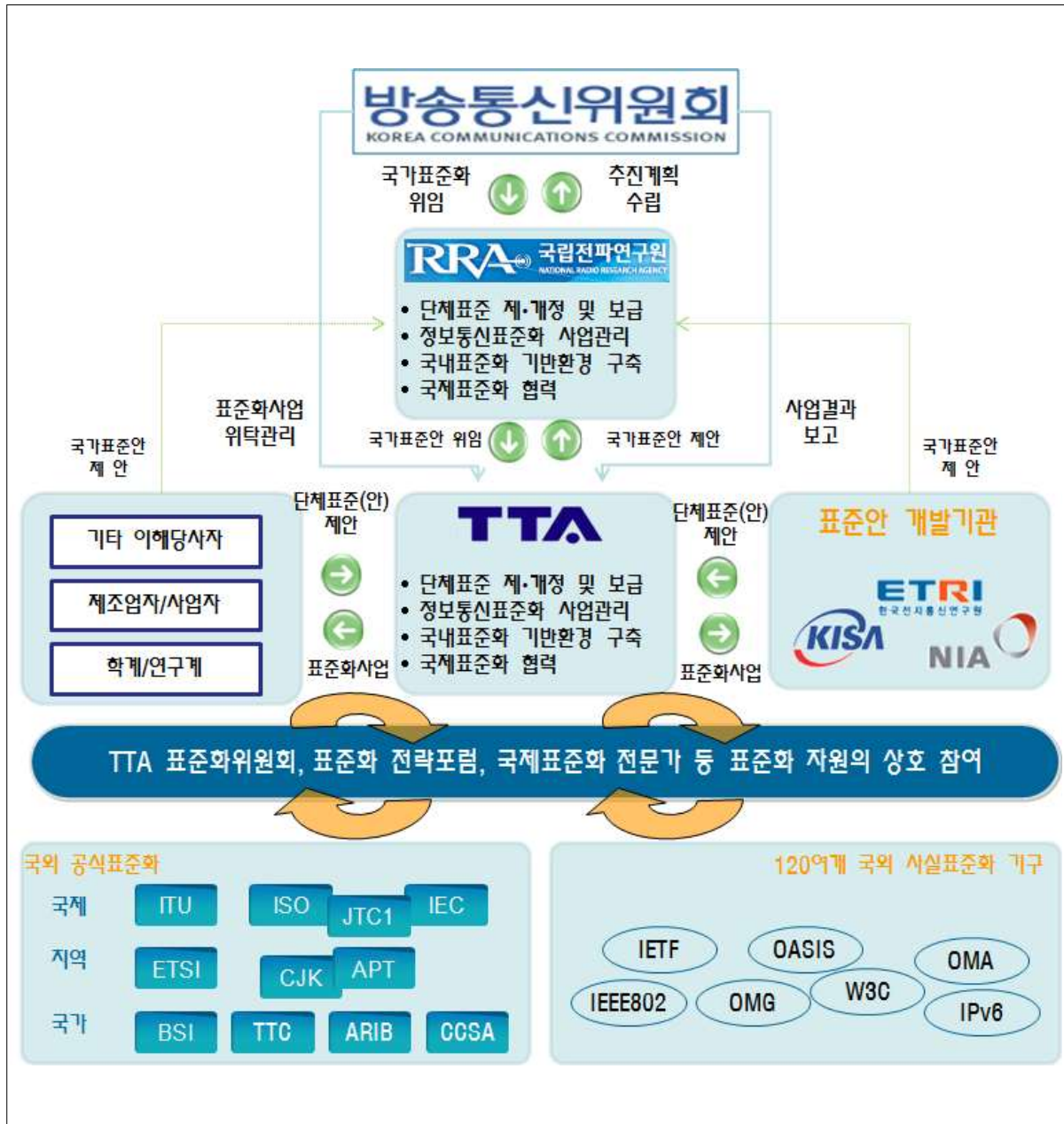
- 2011년 - 정보통신단체표준 개발 : 432
 - 표준용어 심의·채택 : 110어
 - ICT 표준화 포럼 선정·지원 : 38개
 - 방송통신분야 표준전문가 교육·세미나 : 18회
 - 방송통신기술 자문서비스 : 61회
- 2012년 - 정보통신단체표준 개발 : 연 435여종
 - 표준용어 심의·채택 : 연 110어
 - ICT 표준화 포럼 선정·지원 : 연 30여개
 - 방송통신분야 표준전문가 교육·세미나 : 연 18회
 - 방송통신기술 자문서비스 : 연 50회

○ 2013년 ~ 2015년

- 정보통신단체표준 개발 : 연 400여종
- 표준용어 심의·채택 : 연 110여개
- ICT 표준화 포럼 선정·지원 : 연 30여개
- 방송통신분야 표준전문가 교육·세미나 : 연 18회
- 방송통신기술 자문서비스 : 연 50회

3. 추진전략

□ 추진체계



□ 관련법령 등

-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2010. 4. 4)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2. 20)
-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부개정 2009. 5. 22)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정, 2010. 3. 22)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 2010. 12. 27)
- 전파법 (일부개정 2010. 7. 23)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2. 31)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2009. 6. 9)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3. 17)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0. 7. 9)
-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6. 9)
-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 11. 10)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1. 1. 4)
-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전파연구소고시 제2011-9호, 2011. 1. 25)

4.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과제 번호	과제명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1-1	신성장 원천기술 표준개발 확대	6,264	7,303	7,303	7,303	7,303	35,476
1-2	원천기술 국제표준 선점	4,145	4,145	4,145	4,145	4,145	20,725
1-3	R&D - 표준화 연계 활성화	1,400	1,400	1,400	1,400	1,400	7,000
2-1	기업친화적 인증제도 개선	290	290	290	290	290	1,450
2-2	사용자 편의형 표준지원	488	488	488	488	488	2,440
3-1	생활공감형·서비스 표준화	52	60	60	60	60	292
3-2	사회안전·보안표준화	110	110	110	110	110	550
3-3	공공·행정표준화	225	225	225	225	225	1,125
4-1	선진형 표준체계 구현	60	80	80	80	80	380
4-2	민간 표준참여 향상	5,125	5,125	5,125	5,125	5,125	25,625
총 계		18,159	19,226	19,226	19,226	19,226	95,063

II

12대 중점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1-① 신성장 원천기술 표준개발 확대

1. 최종목표

- 미래 방송통신 서비스 및 녹색 성장을 위한 표준화 추진
 - 녹색성장 표준화 추진으로 기후변화 글로벌 이슈에 대응
 - 미래 방송통신 서비스 선도를 위한 선제적 표준 개발 및 글로벌 표준 경쟁력 강화

2. 사업개요

사업 1 그린 ICT 표준화

□ 사업 목적

-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 분야(Green of ICT) 및 타 산업의 (Green by ICT) 에너지 효율성 향상
 - 제품, 기관, 사업, 국가 등에 대한 정보통신의 측정지표 및 평가, 타 산업의 그린 ICT 적용 기술 등의 표준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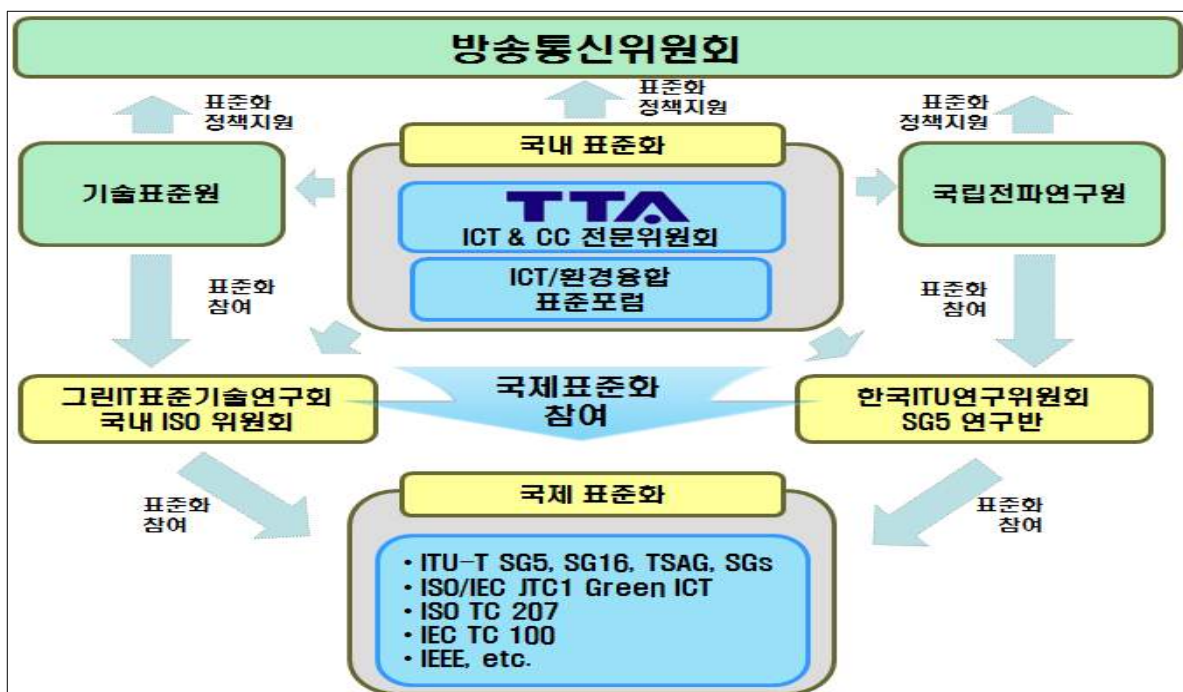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필요성 >

◇ 저탄소 녹색성장법 시행령(10.4)과 교토의정서 후속 협정으로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대한 방송통신 분야 대응 필요

- ICT 기반 기후변화 측정지표, 기후변화 모니터링, 기후변화 대응 ICT 기술 표준 개발
- 국내 산업계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표준화에 적극 대응
 - ITU-T에 국제 표준화 기고로 표준화 주도(의장단 진출)
 - ICT를 활용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 등의 표준화 추진
 - 국내 ICT/환경융합표준포럼 및 TTA 표준화위원회 등을 통한 국내 표준 개발

□ 추진체계



□ 추진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

제33조(표준화의 추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생산업자에게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32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녹색산업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업 2 미래 방송통신서비스 표준화 추진

□ 사업 목적

- 미래 방송통신 서비스 선도를 위한 선제적 표준개발 및 글로벌 표준 경쟁력 강화

□ 사업 내용

- 고부가가치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미래 유망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표준개발을 중점지원
 - 차세대 방송, 차세대이동통신(4G), 미래인터넷 등 선행 표준 개발 확대
 - 모바일시대에 다양한 응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표준 개발 확대

□ 추진체계



□ 추진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 15. (생략)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

제33조(표준화의 추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생산업자에게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전파법 제63조

제63조(표준화)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생략)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전파 관련 표준의 적합인증
3. 그 밖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4조(표준화의 추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 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3. 연도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 1 그린 ICT 표준화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부사업					
국내표준 제정	5종 ←→	4종 ←→	←	—	4종/년 →
국제표준 기고서	38건 ←→	30건 ←→	←	—	30건/년 →

사업 2 미래 방송통신서비스 표준화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부사업					
방송통신 표준개발 지원	18개 ←→	21개 ←	←	10여개	/년 →

□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세부사업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그린 ICT 표준화	600	600	600	600	600	3,000
미래 방송통신서비스 표준화	5,664	6,703	6,703	6,703	6,703	32,476
총 계	6,264	7,303	7,303	7,303	7,303	35,476

4. 2011년도 추진실적

사업 1 그린 ICT 표준화

□ 2011년도 추진 목표

- 그린 ICT 국제표준화 대응
- 그린 ICT 국내 표준 개발

□ 2011년도 추진 실적

- 그린 ICT 표준 개발 : 5종
- 그린 ICT 국제표준화 기고서 제출 : 38건
 - 국가기고서 27건, 섹터기고서 11건

□ 평가

- 국내 그린 ICT 표준화를 위해, 'ICT 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그린데이터센터 수준진단모델' 및 'ICT분야 온실가스배출량 산정지침' 등 TTA표준 5건 제정
- ITU-T SG5 WP(기후변화) 및 ASTAP "ICT & Climate Change" 작업반 주도적 참여

사업 2 미래 방송통신서비스 표준화

□ 2011년도 추진 목표

- 방송통신 미래서비스 전략분야에 대한 선행 표준개발 및 산업체의 표준화활동 확대 등 민간의 표준 역량 강화

□ 2011년도 추진 실적

- 미래 방송통신 서비스 표준화 과제 발굴·지원 : 18개
 - 3DTV, UHDTV, AT-DMB, 모바일 IPTV, 4G 등 신규 방송 서비스의 선제적 표준 개발 지원

□ 평가

- 유망 미디어서비스 조기 표준 정립, 모바일 시대 대비 표준 개발 및 방송통신 유·무선 인프라의 국제표준화 대응을 위한 표준개발 과제 선정 및 지원

5. 2012년도 추진계획

사업 1 그린 ICT 표준화

□ 2012년도 추진 목표

- 그린 ICT 국제표준화 대응
- 그린 ICT 국내 표준 개발

□ 2012년도 추진 계획

- 그린 ICT 표준 개발 : 4종
- 그린 ICT 국제표준화 기고서 제출 : 30건

□ 2012년도 주요 추진일정

- 국내 표준 개발 : 연중
- 국제 표준화 활동 : 연중

사업 2 미래 방송통신서비스 표준화

□ 2012년도 추진 목표

- 방송통신 미래서비스 전략분야에 대한 선행 표준개발 및 산업체의 표준화활동 확대 등 민간의 표준 역량 강화

□ 2012년도 추진 계획

- 미래 방송통신 서비스 표준화 과제 발굴·지원 : 21개
 - 3DTV, UHDTV, AT-DMB, 모바일 IPTV, 4G 등 신규 방송 서비스의 선제적 표준 개발 지원

□ 2012년도 주요 추진일정

- 과제 선정 : '12년 1월
- 사업 중간진도점검 : '12년 7월
- 사업 최종 점검 : '12년 12월

1-② 원천기술 국제표준 선점

1. 최종목표

- 국내 원천 기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 국제 표준화 활동 강화
 - 세계 2위 수준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속·강화
 - ITU 국제표준안 제안 : '10년 (319건) → '15년 (500건)
 - 의장단 진출 : '10년 (118명) → '15년 (135명)

2. 사업개요

사업 1 방송통신 국제표준 전문가 지원

□ 사업 목적

- 전략적으로 필요한 핵심 분야별 국제표준화 전문가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국제표준화회의 참석경비를 지원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을 확보하고, 국제표준화의 초기 단계부터 우리나라의 기술적·정책적 영향력을 증진시켜 기술개발 결과와 서비스를 국제표준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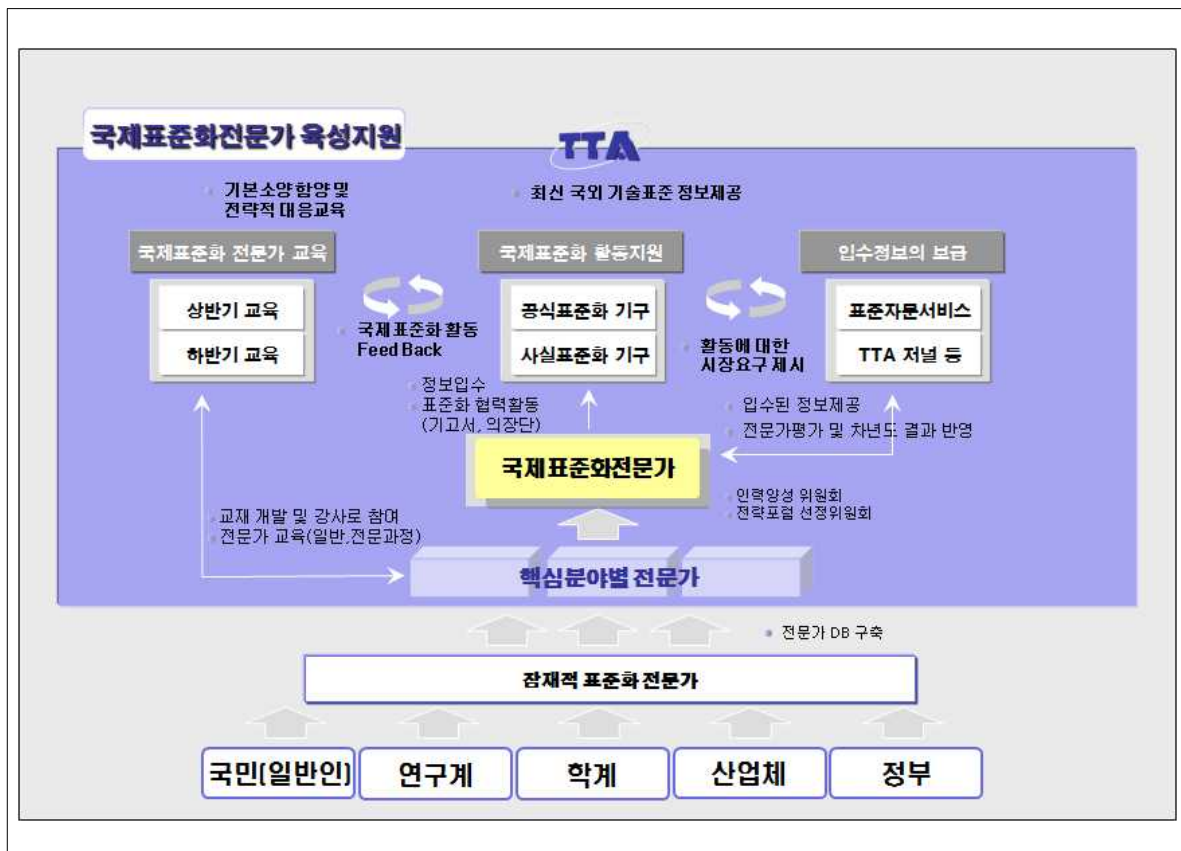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필요성 >

◇ 국내 핵심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해서는 국제표준화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 양성·지원이 필요

- 방송통신 표준화 전략분야 및 국내 핵심역량 위주의 국제 표준전문가 선정 및 지원
 - 전략 분야에 대한 국내 전문가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 국내 국제표준화전문가의 국제표준화기구의장단 진출 지원

□ 추진체계



□ 추진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3조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적 공동제작 및 유통, 방송통신 관련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방송통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전자법 제47조의3 제7항

제47조의3(전자파적합성 등)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적합성 등에 관한 국제 협력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전자법 제65조

제65조(국제협력의 촉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이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이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 2 방송통신기술 국제표준 제안 강화

□ 사업 목적

- ITU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대응 활동 지원

- ITU 표준화 연구반에 대응하는 한국ITU연구위원회를 적극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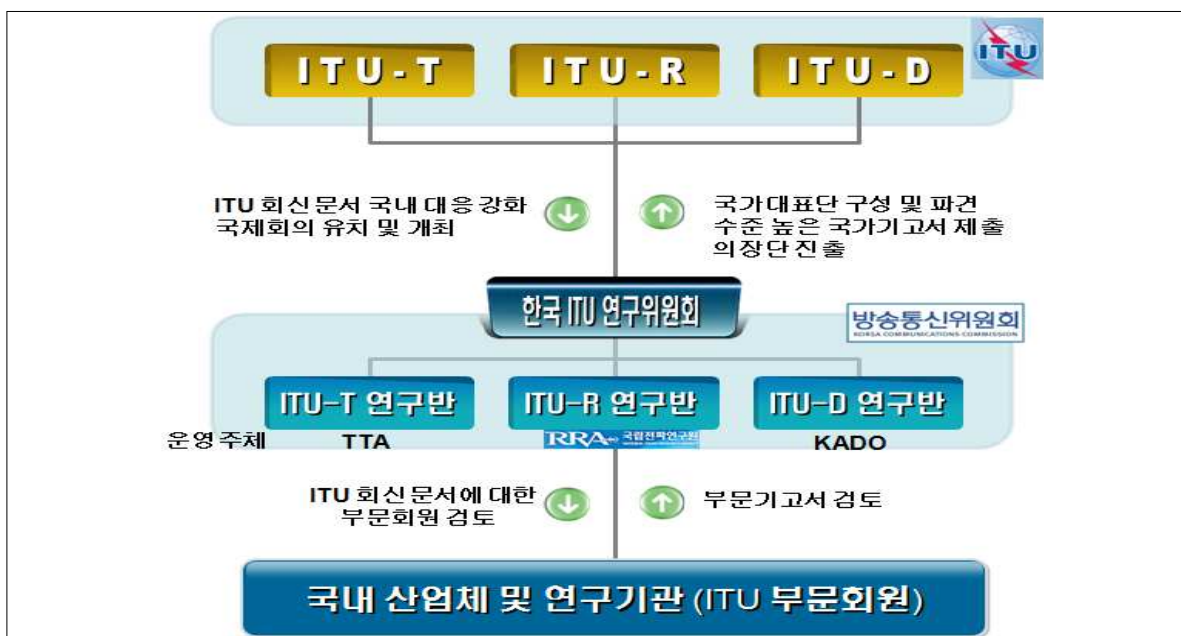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필요성 >

◇ 정부간 조약기구인 ITU 등 공적 표준화 활동을 통하여 국내 방송통신 기술 및 정책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 ITU 등 공적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제 분석을 통한 국제 표준화 활동의 대응방안 마련
 - ITU 등 방송통신 분야 산·학·연 의견을 반영한 국가 기고서 개발
- ITU 연구반회의 등을 국내에 유치하여 ITU 국제표준화 활동에서의 영향력 확대

□ 추진체계



□ 추진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3조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적 공동제작 및 유통, 방송통신 관련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방송통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전파법 제47조의3 제7항

제47조의3(전자파적합성 등)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적합성 등에 관한 국제 협력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 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전파법 제65조

제65조(국제협력의 촉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이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이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 3 방송통신 표준화기구 의장단 등 임원수임 확대

□ 사업 목적

- 신규 서비스 및 첨단 기술 발표의 장인 국제표준화회의에서 아국의 기술적·정책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의장단 진출 확대 추진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필요성 >

- ◇ WTO/TBT 발효 후 국제표준이 가지는 구속력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표준화회의를 주도하는 의장단 및 실무 책임자의 역할 강화
 - ITU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의 의장단들은 표준화작업의 조정은 물론 표준화작업 실무책임자를 핵심 기술 분야에 배정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

- 국제표준화전문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의장단 수임 유도 및 의장단 수임 중인 전문가에 대한 집중 지원
- 한국 ITU 연구위원회, TTA 표준화위원회 및 표준화전략 포럼 등의 국내 대응조직을 통한 해당 국제표준화회의 대응력 강화 및 의장단 진출전략 마련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방안 및 회의 진행 방법 등 전문가 육성교육을 통해 의장단으로서의 자질 함양

□ 추진체계



□ 추진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3조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적 공동제작 및 유통, 방송통신 관련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방송통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전자파법 제47조의3 제7항

제47조의3(전자파적합성 등)

-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적합성 등에 관한 국제 협력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 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전파법 제65조

제65조(국제협력의 촉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이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이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3. 연도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 1 방송통신 국제표준 전문가 지원

세부사업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국제표준화전문가 선정	275명 ↔	280명 ↔	280명 ↔	280명 ↔	280명/년 ↔
회의 참가 지원	210회 ↔	220회 ↔	220회 ↔	220회 ↔	220회/년 ↔

사업 2 방송통신기술 국제표준 제안 강화

세부사업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국가기고서 제출	319건 ↔		300여건 ↔	/년	↔
국가기고서 국제표준화 반영	306건 ↔		300여건 ↔	/년	↔
ITU 등 국제회의 개최	4회 ↔		1회 ↔	/년	↔

사업 3

방송통신 표준화기구 의장단 등 임원수입 확대

세부사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진출		120명	122명	126명	130명

□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세부사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방송통신국제표준 전문가 지원		1,345	1,345	1,345	1,345	1,345
방송통신기술 국제표준 제안 강화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표준화기구 의장단 등 임원수입 확대		800	800	800	800	800	4,000
총 계		4,145	4,145	4,145	4,145	4,145	20,725

4. 2011년도 추진실적

사업 1

방송통신 국제표준 전문가 지원

□ 2011년도 추진 목표

- 국제표준화전문가 Pool 구성(280명) 및 회의 참가 지원(220회)

□ 2011년도 추진 실적

- 국제표준전문가 선정 275명, 회의 참가 지원 210회

□ 평가

-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분야별·기구별 표준화 전문가 육성 지원

사업 2 방송통신기술 국제표준 제안 강화

□ 2011년도 추진 목표

- 국내 방송통신 기술 및 정책의 ITU 등 국제 공적 표준에의 반영 확대
- ITU 국제표준화 활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ITU 연구반 회의의 국내 유치 및 개최 지원

□ 2011년도 추진 실적

- ITU 등 국가기고서 제출 : 319건
- ITU 등 국제표준화에 반영 : 306건
-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개최 및 지원 : 4회
 - 제5차 아·태지역 WRC 준비회의(APT Preparation Group for WRC-12) ('11.7)

- ITU-T SG5 (환경과 기후변화) 회의('11.9) 및 ITU 기후변화 심포지엄 개최 ('11.9)
- APT 관리위원회/총회 개최('11.11)

□ 평가

- 한국ITU연구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국제표준화기구(ITU)에 국내 기고서 제안, 국제표준으로 반영
- 국제회의 국내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에 유리한 입장 반영

사업 3 방송통신 표준화기구 의장단 등 임원수입 확대

□ 2011년도 추진 목표

- 방송통신 표준화기구 의장단 120명 진출 추진

□ 2011년도 추진 실적

-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120명 (181개 의석)

□ 평가

- 핵심 국제표준화 분야의 작업 주도 및 조정 등의 영향력 발휘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유리한 지위 확보
- 국제 표준화 문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 제고

5. 2012년도 추진계획

사업 1 방송통신 국제표준 전문가 지원

□ 2012년도 추진 목표

- 국제표준화전문가 Pool 구성(280명) 및 회의 참가 지원(220회)

□ 2012년도 추진 계획

- 국제경쟁력이 있는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국제표준화회의의장단 진출 및 활동 지원을 강화
- 기술변화에 따른 국가표준화전략분야와 국내 핵심역량 위주의 전문가 선정 및 지원
 - Green ICT, Smart Grid 등 융합 및 국가전략분야 전문가 지속적 확보 및 지원 강화
 - 중소·벤처기업 전문가 선발 확대

□ 2012년도 주요 추진일정

- 국제표준화전문가 활동 평가 : '12년 1월
- 신규 국제표준화전문가 모집 공고 및 접수 : '12년 2월
- 신규 국제표준화전문가 선정 : '12년 3월
- 국제표준화전문가 활동 지원 : '12년 1월~12월

사업 2 방송통신기술 국제표준 제안 강화

□ 2012년도 추진 목표

- 국내 방송통신 기술 및 정책의 ITU 등 국제 공적 표준에의 반영 확대
- ITU 국제표준화 활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ITU 연구반 회의의 국내 유치 및 개최 지원

□ 2012년도 추진 계획

- ITU 등 국가기고서 제출 : 300 여건
- ITU 등 국제표준화에 반영 : 300 여건
-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개최 및 지원 : 1회

□ 2012년도 주요 추진일정

- '11년도 ITU 국가기고서 검토 등 기본계획 수립 : '12년 1월
- ITU 등 국가기고서 검토 및 제출 : 연중
- 2012년도 활동결과 분석 및 평가 : '12년 12월

사업 3 방송통신 표준화기구 의장단 등 임원수임 확대

□ 2012년도 추진 목표

- 방송통신 표준화기구 의장단 120명 진출 추진

□ 2012년도 추진 계획

- 핵심 전문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진출 확대
- 한국 ITU 연구위원회, TTA 표준화위원회 및 표준화전략 포럼 등을 통한 국제표준화회의 전략적 대응

□ 2012년도 주요 추진일정

- 한국 ITU 연구위원회 및 TTA 표준화위원회 운영 : '12년 1월~12월
- 표준화전략포럼 선정·지원 : '12년 3월~12월
- 국제표준화전문가 경비지원 : '12년 1월~12월

1-③ R&D-표준화 연계 활성화

1. 최종목표

- 국내 원천 기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표준화를 연계하여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개발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 확대

2. 사업개요

사업 1 방송통신 전략분야 R&D - 표준화 연계 강화

□ 사업 목적

- 개발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 확대
- 연구개발시 표준화를 통해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先순환 구조를 형성하도록 표준화 연계전략 수립 추진

< 연구개발과 특허·표준의 先순환 체계 >



* 사업기획시 방송통신 PM이 참여하여 기술개발과 표준화 연계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필요성 >

◇ 기술개발과 표준화 연계(선순환 연구개발 체계) 강화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구개발 투자효율성 제고

- 국내외 기술·표준화 동향분석을 통한 표준화 추진전략 수립
 - 국제표준 선도 및 표준특허 가능분야 발굴 등 국내외 표준화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추진체계



□ 추진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 15. (생략)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

제33조(표준화의 추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생산업자에게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전파법 제63조

제63조(표준화)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생략)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전파 관련 표준의 적합인증
3. 그 밖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4조(표준화의 추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 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3. 연도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 1 방송통신 전략분야 R&D - 표준화 연계 강화

세부사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표준화 추진전략 수립		31개		30여개/년	

□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세부사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방송통신 전략분야 R&D - 표준화 연계 강화		1,400	1,400	1,400	1,400	1,400
총 계		1,400	1,400	1,400	1,400	1,400	7,000

4. 2011년도 추진실적

사업 1 방송통신 전략분야 R&D - 표준화 연계 강화

□ 2011년도 추진 목표

- 방송통신 전략분야 표준화 추진전략 수립(Rolling Plan)

- 선행 개발된 표준을 기술개발에 활용하고 개발기술을 국내외 표준에 반영하여 실용화를 촉진
- 기술개발-표준화 연계 체계 강화를 통해 국제표준 선도 및 표준특허 가능분야 발굴

※ “기술개발-표준화-지재권”을 연계하는 선진형 R&D체계 구축

□ 2011년도 추진 실적

- 기술개발과 표준화사업의 표준화성과 및 국제표준 동향 공유를 통해 국제표준 특허 가능분야 발굴 및 확보 전략 수립
- 중점 표준화 전략 선정 : 31개

□ 평가

- 표준기획단계부터 연구개발(R&D)과 표준화 연계를 고려하여 국가차원의 적시 표준개발 계획 및 시장 파급효과가 큰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수립

5. 2012년도 추진계획

사업 1 방송통신 전략분야 R&D - 표준화 연계 강화

□ 2012년도 추진 목표

- 방송통신 전략분야 표준화 추진전략 수립(Rolling Plan)

- 선행 개발된 표준을 기술개발에 활용하고 개발기술을 국내외 표준에 반영하여 실용화를 촉진
- 기술개발-표준화 연계 체계 강화를 통해 국제표준 선도 및 표준특허 가능분야 발굴

※ “기술개발-표준화-지재권”을 연계하는 선진형 R&D체계 구축

□ 2012년도 추진 계획

- 기술개발과 표준화사업의 표준화성과 및 국제표준 동향 공유를 통해 국제표준 특허 가능분야 발굴 및 확보 전략 수립
- 중점 표준화 전략 선정 : 30 여개

□ 2012년도 주요 추진일정

- 중점기술 선정 : '12년 4월
- 기술개발연계과제 도출을 위한 사전 기획 : '12년 9월
- 2013년도 기술개발연계과제 도출 및 선정 : '12년 12월

2-① 기업 친화적 인증제도 개선

1. 최종목표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의 선진화 및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 확대로 기업 제품의 시장 경쟁력 강화

2. 사업개요

사업 1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선진화

□ 사업 목적

- 기업들의 적합성평가제도 합리화 요구를 해소하고, 시험 및 인증 등 적합성평가운영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춤

□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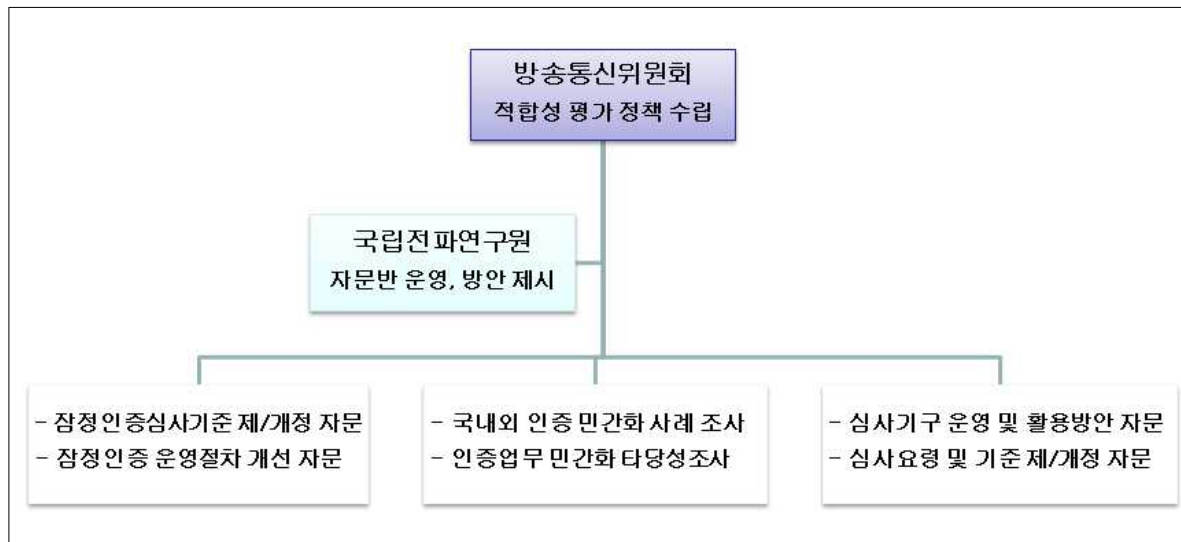
< 사업추진 필요성 >

◇ 국제적 수준의 적합성평가체제로 전환하여 방송통신 제품 시장 국내외 경쟁력 강화

- 지정시험기관간 비교속련도 표준시료 개발 및 지정시험기관 평가지표 개발 연구 추진
- 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 구축·운영

- 미국·EU 및 일본 등 주요국가의 적합성평가체계 조사 등을 통해 국제기준에 맞는 적합성평가 체계를 구축

□ 추진체계



□ 추진근거

-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 전파법 제58조의5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구로 하여금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의 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사업 2 방송통신분야 정부간 상호인정협정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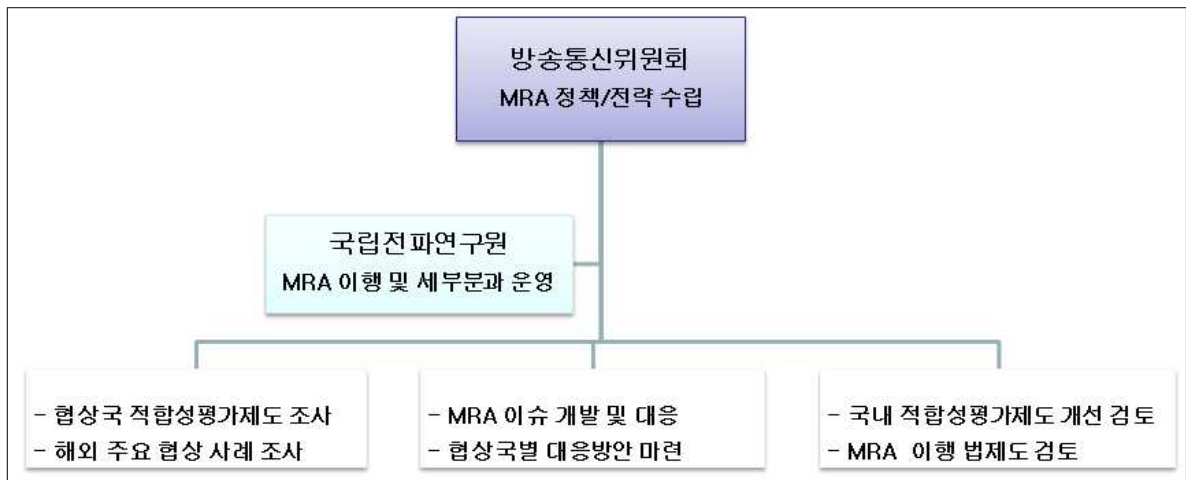
□ 사업 목적

- 국제적 추세에 따라 국가간 적합성평가결과의 상호인정협정(MRA)을 활성화하여 국내업체의 해외진출을 촉진
- 미국, EU,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전략국가와의 국가간 MRA 활성화 및 신규 추진방안 검토

□ 사업 내용

- WTO 체제하에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내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및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추진
 - 주요 협상국가의 방송통신분야 교역량 및 적합성평가제도 분석을 통한 FTA/MRA 대응방안 및 협상전략 검토
 - 기존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과의 상호인정범위 확대 검토

□ 추진체계



□ 추진근거

○ 전파법 제58조의8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3. 연도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 1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선진화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제도 선진화	← 제도정비 →	←	→ 운용	→	→

사업 2 방송통신분야 정부간 상호인정협정 확대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FTA/MRA 추진	← →	←	→ 계속	→ 추진	→

□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세부사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선진화		50	80	-	-	-
방송통신분야 정부간 상호인정협정 확대		40	40	40	40	40	200
총 계		240	240	240	240	240	1,450

4. 2011년도 추진실적

사업 1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선진화

□ 2011년도 추진 목표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연구 및 관련 제도 정비 추진

□ 2011년도 추진 실적

-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연구 추진
 - 「방송통신분야 아세안 국가간 인증협력방안」 연구
- 방송통신 적합성평가기관 전문심사평가체계 구축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전파연구원 고시, '11.1)
 - 방송통신분야 전문심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파연구원 공고, '11.3)

- 기타 방송통신기자재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심사수행에 관한 규정 등 7건의 고시 및 공고 제정

□ 평가

-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제도 정비 연구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개편된 방송통신분야 인증제도의 순조로운 정비가 기대됨

사업 2 방송통신분야 정부간 상호인정협정 확대

□ 2011년도 추진 목표

- 방송·통신산업의 정부간 상호인정협정 확대 및 신규체결 추진

□ 2011년도 추진 실적

- 한-EU FTA 후속이행조치 마련
 - 한·EU FTA 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 ('11.6)
- 신규 FTA/MRA 대응방안 마련
 - 캐나다('97.1), 미국('05.5) 등 MRA 1단계 체결국가와 MRA 2단계 체결 추진 및 싱가포르 등 신규 FTA/MRA

협상추진

- 한-베트남 MRA 적용범위 확대

□ 평가

- 국제 수준의 적합성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MRA/FTA 실무 협의 진행함으로써 향후 MRA 2단계 체결과 FTA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

5. 2012년도 추진계획

사업 1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선진화

□ 2012년도 추진 목표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연구 및 관련 제도 정비 추진

□ 2012년도 추진 계획

-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연구 추진
 -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제도 이행을 위한 후속제도 정비」 연구 등
- 「지정시험기관간 비교속련도 표준시료 개발」 및 「지정 시험기관 평가지표 개발」 연구 추진

□ 2012년도 주요 추진일정

- 관련 법령·제도 개정안 마련 : '12년 12월
- 「지정시험기관간 비교속련도 표준시료 개발」 및 「지정 시험기관 평가지표 개발」 연구 추진 : '12년 12월

사업 2 방송통신분야 정부간 상호인정협정 확대

□ 2012년도 추진 목표

- 방송·통신산업의 정부간 상호인정협정 확대 및 신규체결 추진

□ 2012년도 추진 계획

- MRA/FTA 이행 및 확대 활성화
 - 미국, 캐나다 MRA 2단계 체결을 위한 협상 추진
 - 칠레, 베트남 등 기체결 MRA 이행
 - 인도, 중국, 일본 등 신규 MRA/FTA 체결 협상 추진

□ 2012년도 주요 추진일정

- 한·캐, 한·미, 한·싱가포르 MRA 2단계 협상 : 연중
- 인도, 중국, 일본 등 신규 MRA/FTA 체결 협상 추진 : 연중

2-② 사용자 편의형 표준지원

1. 최종목표

- 국내외 표준 정보 입수 및 보급을 통해 방송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신기술 개발에 기여

2. 사업개요

사업 1 방송통신 표준 보급 및 확산

사업 목적

- 국내외 표준 정보 입수 및 보급을 통해 방송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신기술 개발에 기여

사업 내용

< 사업추진 필요성 >

◇ 신속히 변화하는 방송통신기술 및 표준화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국내 산업계에 보급하여 적기의 방송통신기술 개발 유도

- 국내외 표준화 활동 정보를 One-Stop으로 신속하게 제공하는 종합서비스 제공시스템 구축
 - 입수된 국내외 방송통신표준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화

- TTA 표준화위원회 등 주요 표준화 정보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표준정보 보급

□ 추진체계



□ 추진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 15. (생략)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

제33조(표준화의 추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생산업자에게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전파법 제63조

제63조(표준화)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생략)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전파 관련 표준의 적합인증
3. 그 밖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4조(표준화의 추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 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3. 연도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 1 방송통신 표준 보급 및 확산

세부사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방송통신표준 정보 D/B 입력		1,200건 ←————→	←————	1,200건/년	—————
표준화 정보 보급 및 이메일링 서비스		52회 ←————→	←————	50여회/년	—————	————→

□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세부사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방송통신민간표준 보급 및 확산		488	488	488	488	488
총 계		488	488	488	488	488	2,440

4. 2011년도 추진실적

사업 1 방송통신 표준 보급 및 확산

□ 2011년도 추진 목표

- 국내외 표준화 활동 정보의 신속 제공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시스템 구축·운영

□ 2011년도 추진 실적

- 신속한 최신 표준 정보 DB 구축 : 1,200여건
- 이메일링 서비스를 통한 표준화 정보 제공 : 52회

□ 평가

- 국내외 표준 규격을 입수하여 국내에 보급하고, 매주 국제 표준기술 동향을 이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제공

5. 2012년도 추진계획

사업 1 방송통신 표준 보급 및 확산

□ 2012년도 추진 목표

- 국내외 표준화 활동 정보의 신속 제공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시스템 구축·운영

□ 2012년도 추진 계획

- 신속한 최신 표준 정보 DB 구축 : 1,200여건
- 이메일링 서비스를 통한 표준화 정보 제공 : 52회

□ 2012년도 주요 추진일정

- 표준화 정보 DB 구축 및 개선, 서비스 제공 : 연중
- 표준화 정보자료 발간·보급 : 연중

3-① 생활공감형 · 서비스 표준화

1. 최종목표

- 생활 공감형 방송통신 표준화 추진
 -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방송통신 표준을 발굴하여 국가표준화 추진

2. 사업개요

사업 1 방송통신분야 생활표준 · 서비스 표준화

- 사업 목적
 -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방송통신 표준을 발굴하여 적기에 국내 · 외 표준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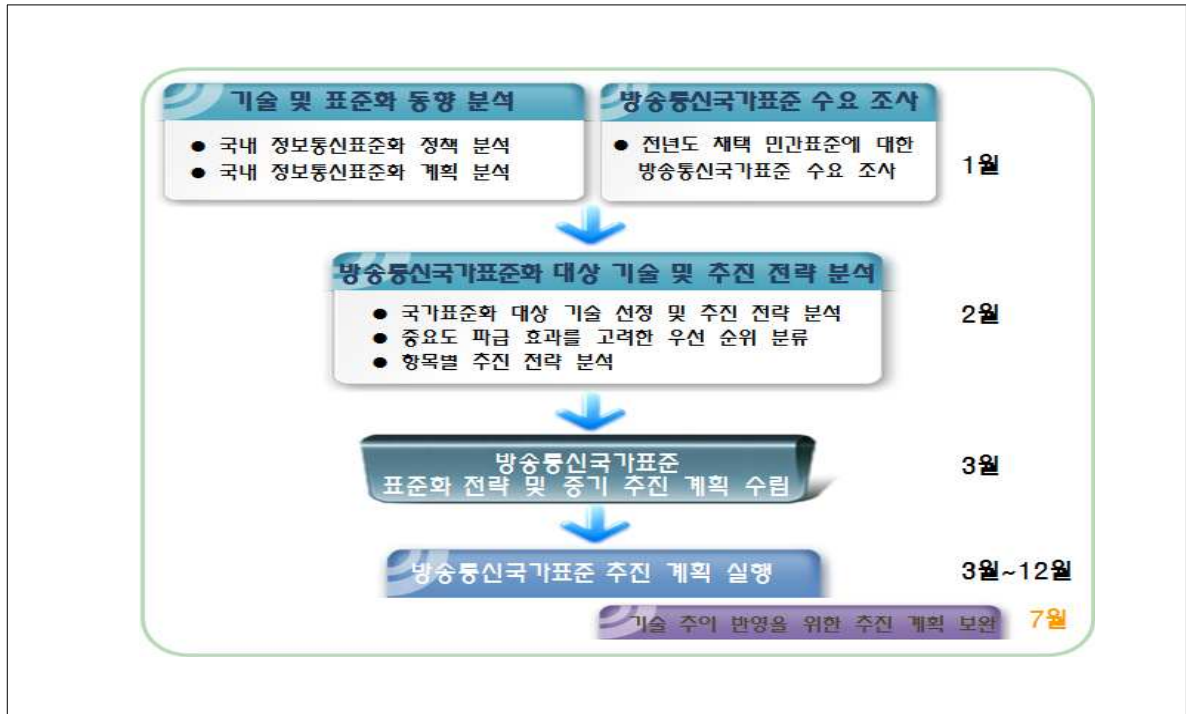
사업 내용

< 사업추진 필요성 >

◇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든 방송통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생활 공감형 방송통신 표준화 대상 발굴 및 국가표준화 추진

-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 분야 생활공감형 표준화 수요 조사 실시 후, 국가표준화 추진

□ 추진체계



□ 추진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

제33조(표준화의 추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생산업자에게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

제34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① 정보통신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정보통신 기술 지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기술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

○ 전파법 제63조

제63조(표준화)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생략)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전파 관련 표준의 적합인증
3. 그 밖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4조(표준화의 추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 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3. 연도별 추진계획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 1 방송통신분야 생활표준·서비스 표준화

세부사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생활공감형 방송통신표준(KCS) 제정		← 2종 →	←		

* KCS : Korean Communications Standard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세부사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주파수자원개발 및 차세대 이동통신 고도화		52	60	60	60	60
총 계		52	60	60	60	60	292

4. 2011년도 추진실적

사업 1 방송통신분야 생활표준·서비스 표준화

2011년도 추진 목표

-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방송통신 표준을 발굴하여 적기에 국내·외 표준화 추진

□ 2011년도 추진 실적

- 생활공감형 표준 발굴 및 국가표준화 추진 : 2종

□ 평가

- ‘전화기 한글 문자 자판 배열 체계’, ‘카메라 폰 촬영음 크기 표준’ 제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표준을 적시에 제정하여 국민 생활 편의에 기여

5. 2012년도 추진계획

사업 1 방송통신분야 생활표준·서비스 표준화

□ 2012년도 추진 목표

-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방송통신 표준을 발굴하여 적기에 국내·외 표준화 추진

□ 2012년도 추진 계획

- 생활공감형 표준 발굴 및 국가표준화 추진 : 2종

□ 2012년도 주요 추진일정

- 국가표준화 대상 수요조사 : '12년 1월 ~ 3월
- 국가표준화 추진 대상 선정 : 3월
- 국가표준(KCS) 제정 : 연중

3-② 사회안전·보안 표준화

1. 최종목표

- 스마트폰·이동통신의 발달로 개인 정보보안 및 인프라 보안 등 사회 안전 및 보호 등을 위한 표준화
 - 무선인터넷 사용 급증으로 인한 사회 보안 취약 개선
 - 전자파 인체보호 등을 위한 전자파 안전기준 마련

2. 사업개요

사업 1 방송통신분야 보안 표준화

□ 사업 목적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송통신 표준화 추진
 - 산업·사회 인프라인 방송·통신 특히 무선통신을 통한 통신보안·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가표준화 추진
 -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및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파 안전기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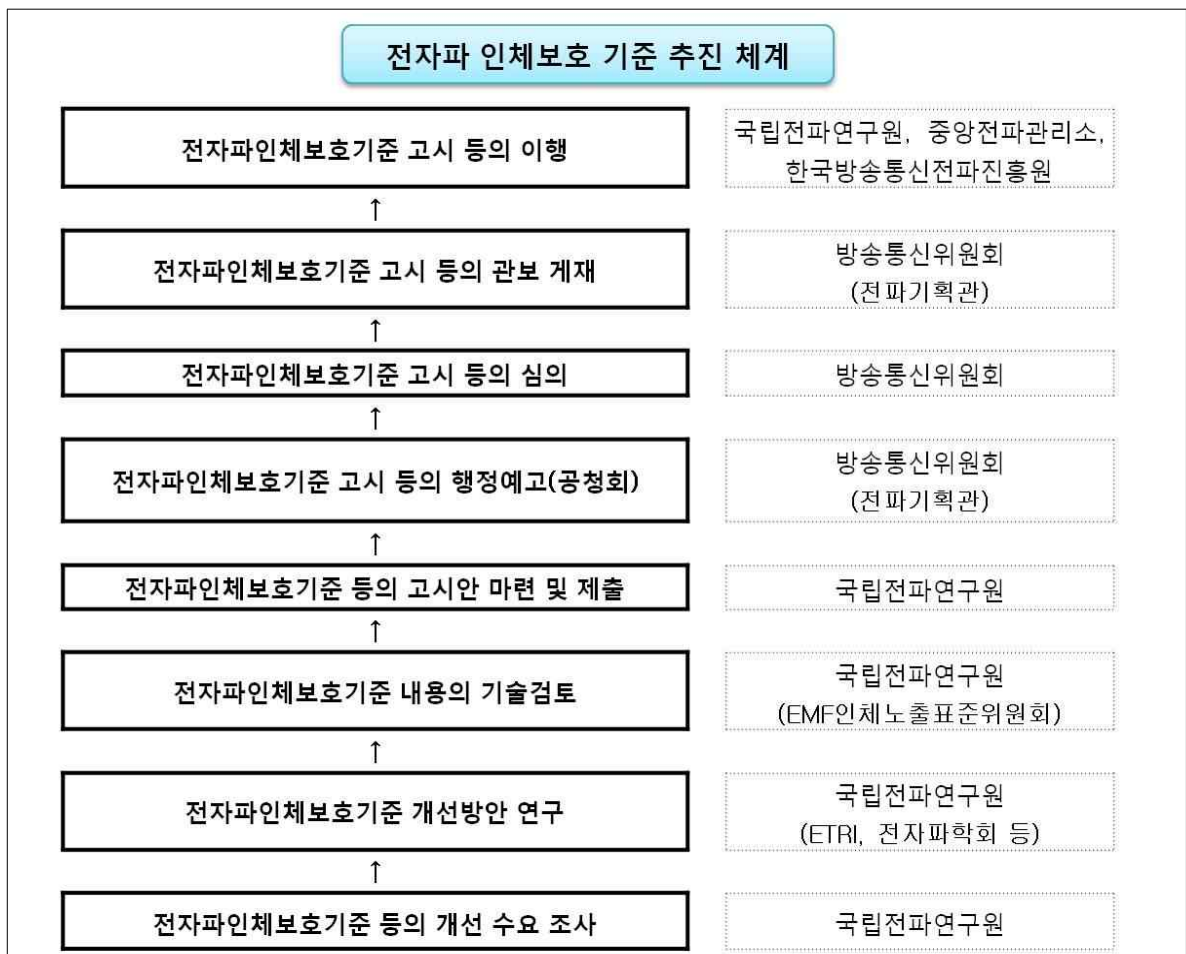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필요성 >

◇ 사회 인프라인 방송통신기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
사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표준화 추진

- 무선통신을 통한 통신 보안·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가 표준화 추진
-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및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파 안전기준 마련

□ 추진체계



□ 추진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

제33조(표준화의 추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생산업자에게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전파법 제47조의3

제47조의3(전자파적합성 등) ①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한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보호기준(이하 "전자파적합성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전자파적합성 여부를 측정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 전파법 제63조

제63조(표준화)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생략)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전파 관련 표준의 적합인증
3. 그 밖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3. 연도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 1 방송통신분야 보안 표준화

세부사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보안 분야 방송통신표준(KCS) 제정	←→	←	—	—	—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기준 마련	←→	←	—	—	—	→ 1종/년

□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세부사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보안 분야 방송통신표준 제정		0	0	0	0	0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기준 마련		110	110	110	110	110	550
총 계		110	110	110	110	110	550

4. 2011년도 추진실적

사업 1 방송통신분야 보안 표준화

□ 2011년도 추진 목표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송통신 표준화 추진

- 산업·사회 인프라인 방송·통신 특히 무선통신을 통한 통신보안·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가표준화 추진
-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및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파 안전기준 마련

□ 2011년도 추진 실적

- 보안 분야 방송통신표준 제정 : 3종
 - * 정보보호 기반·개인정보 보호 및 ID 관리 : 2종
 - * 사이버 보안 : 1종
- 전자파 안전 기준 마련 : 1종

□ 평가

-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기업의 정보보호를 위한 암호정책 수립 지침’,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통신기기의 전자파 흡수율 측정 절차 (30 MHz - 6 GHz)’ 등의 표준을 제정하여 통신보안·개인정보 보호 및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보호에 기여

5. 2012년도 추진계획

사업 1 방송통신분야 보안 표준화

□ 2012년도 추진 목표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송통신 표준화 추진

- 산업·사회 인프라인 방송·통신 특히 무선통신을 통한 통신보안·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가표준화 추진
-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및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파 안전기준 마련

□ 2012년도 추진 계획

○ 보안 분야 방송통신표준 제정 : 4종

- * 정보보호 기반·개인정보 보호 및 ID 관리 : 3종
- * 사이버 보안 : 1종

○ 전자파 안전 기준 마련 : 1종

□ 2012년도 주요 추진일정

○ 사회안전·보안 표준화 : 연중

3-③ 공공·행정 표준화

1. 최종목표

- 국민·행정 편익 증진을 위한 표준화
 - 장애인·노약자·아동 등 취약계층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

2. 사업개요

사업 1 방송통신분야 공공 표준화

- 사업 목적
 - 방송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방송통신 표준화
 -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방송통신표준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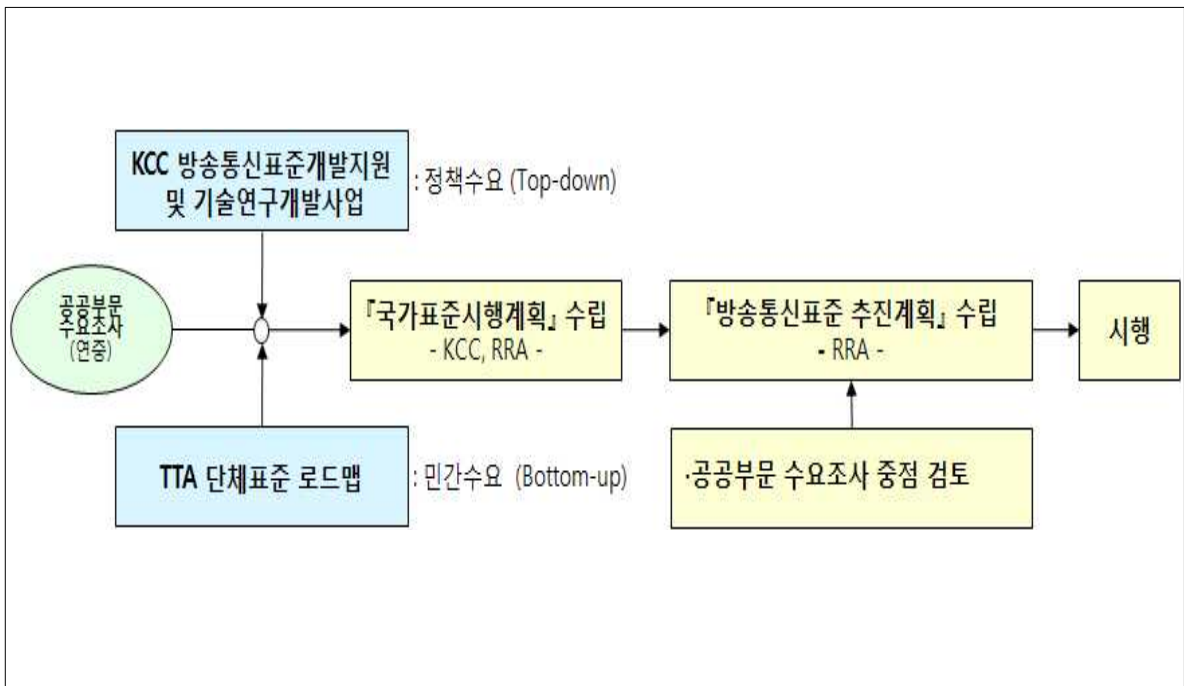
사업 내용

< 사업추진 필요성 >

- ◇ 방송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사회 편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 표준화 추진

- 시각장애인 무선유도기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방송통신 표준화 추진

□ 추진체계



□ 추진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

제33조(표준화의 추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생산업자에게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전파법 제63조

제63조(표준화)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생략)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전파 관련 표준의 적합인증
3. 그 밖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4조(표준화의 추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 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3. 연도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 1 방송통신분야 공공 표준화

세부사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공분야 방송통신표준(KCS) 제정	1종	←	←	←	←

□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세부사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공공분야 방송통신표준(KCS) 제정		0	0	0	0	0
공공주파수 관리 및 개선 기준		30	30	30	30	30	150
방송통신 무선설비 기술기준		50	50	50	50	50	250
방송설비 기술기준		45	45	45	45	45	225
소출력 무선설비 기술기준		52	52	52	52	52	260
방송통신용 유선설비 기술기준		48	50	50	50	50	248
총 계		225	227	227	227	227	1,133

4. 2011년도 추진실적

사업 1 방송통신분야 공공 표준화

□ 2011년도 추진 목표

- 방송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방송통신 표준화
 -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방송통신표준 제정

- 안정적인 국내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의 설치기준 및 이용자 방송통신설비 고도화를 위한 기술기준 개정
 - 풍해로부터 방송통신설비 보호를 위한 대책 기준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FTTH 설비 고도화를 위한 링크성능 규격 등 개정

□ 2011년도 추진 실적

- 방송통신 공공표준 제정 : 2종
- 방송통신용 유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 : 5건
 - * 방송통신기자재의 전기안전 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
 - * 방송통신설비의 풍해대책 보완을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기술기준, 선로설비 기술기준 개정
 - * LTE 서비스 도입에 따른 이동통신 비밀보호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안전성 및 신뢰성 기술기준 개정
 - * 이용자의 FTTH 설비 고도화를 위한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

□ 평가

- '웹 콘텐츠 변환 요구사항', 'IPTV 자막 방송' 표준을 제정하여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편익 증진에 기여
- 방송통신 관련 국내외 표준을 조사 분석한 후 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국제 표준과의 부합화를 추진하였으며, 국내의 이용자 및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의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5. 2012년도 추진계획

사업 1 방송통신분야 공공 표준화

□ 2012년도 추진 목표

- 방송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방송통신 표준화
 -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방송통신표준 제정
- 자연재해로부터 방송통신설비 보호 및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기술기준 개정
 - 낙뢰로 인한 인명 및 장비 보호를 위한 접지측정 기준 등 개정 추진

□ 2012년도 추진 계획

- 방송통신 공공표준 제정 : 1종
- 방송통신용 유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 2건

□ 2012년도 주요 추진일정

- 방송통신 공공표준화 : 연중
- 방송통신용 유선설비 제·개정 연구 : 연중

4-① 선진형 표준체계 구현

1. 최종목표

- 민간표준화 활성화로 선진국형 상향식 표준시스템 정착
 - 방송통신 시장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산업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민간 중심의 표준화 추진

2. 사업개요

사업 1 국가표준과 민간표준 연계강화

□ 사업 목적

- 방송통신 시장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산업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민간 중심의 표준화 추진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민간 표준화 거점으로 하여 민간 중심의 방송통신 표준화 체계의 지속적 강화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필요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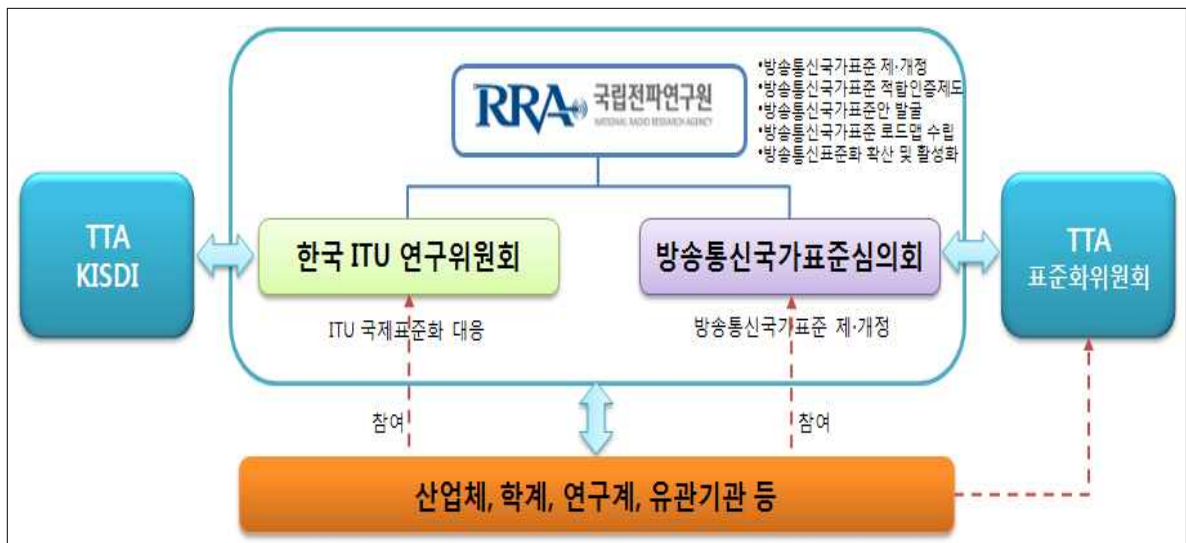
- ◇ 급속한 방송통신 기술발전 및 시장의 다양화로 민간의 전문성과 민첩성을 활용한 상향식 선진적 표준화체계 지속

- TTA를 방송통신 국가표준안 작성기관으로 할 뿐 아니라, TTA 단체표준 중 한국방송통신표준(KCS)으로 제안

* KCS : Korean Communications Standard

- TTA 단체표준 정비 및 국가표준의 질적 향상

□ 추진체계



□ 추진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

제33조(표준화의 추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생산업자에게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

제34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① 정보통신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정보통신 기술 지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기술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

○ 전파법 제63조

제63조(표준화)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생략)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전파 관련 표준의 적합인증
3. 그 밖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4조(표준화의 추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 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3. 연도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 1 국가표준과 민간표준 연계강화

세부사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방송통신 국가표준 운영체계 구축 및 활성화(KCS 제정)	30건 ←→	30건 ←→	30건 ←→	30건 ←→	30건 ←→
방송통신 국제표준화 대응 연구	←	—	—	—	→

□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세부사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방송통신 국가표준 운영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연구	30	50	50	50	50	230
방송통신 국제표준화 대응 연구	30	30	30	30	30	150
총 계	60	80	80	80	80	380

4. 2011년도 추진실적

사업 1

□ 2011년도 추진 목표

- 방송통신 시장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민간 중심의 표준화 추진

□ 2011년도 추진 실적

- 방송통신표준 (KCS) 제정 : 30건

□ 평가

- 사회적 이슈가 된 한글문자판 및 카메라폰 촬영음 크기 표준을 비롯해 신규 방송 서비스인 IPTV 관련 기술 표준 8건과 유·무선통신망의 정보보호분야 표준 등 총 30건의 표준을 제정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 및 편의 확대에 기여

5. 2012년도 추진계획

사업 1

□ 2012년도 추진 목표

- 방송통신 시장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민간 중심의 표준화 추진

□ 2012년도 추진 계획

- 방송통신표준 (KCS) 제정 : 20건

□ 2012년도 주요 추진일정

- 방송통신 국가표준 수요 조사 : 연중
- 방송통신 국가표준 제정 : 연중

4-② 민간 표준참여 향상

1. 최종목표

- 민간표준화 활성화로 선진국형 상향식 표준시스템 정착
 - 방송통신 융합기술 분야의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방송통신 단체표준을 적기에 제정·보급
 - 민간 포럼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 유도, 국내 민간 기술 개발 유도 및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방송통신 표준 및 기술교육을 통한, 국내외 표준화 활동에 대한 정보를 산업체에 보급, 표준 전문인력 육성

2. 사업개요

사업 1 방송통신 분야 민간표준화 활동 강화

□ 사업 목적

- 민간표준 제정 능력을 강화하여 표준의 시장적합성 제고
- 민간표준화기구간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가·국제표준 간 연계를 위한 허브 역할 수행
- 방송통신용어의 국어순화 및 보급을 통해 국민의 혼란을 감소하고 방송통신산업의 효율성 증대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필요성 >

◇ 급속한 방송통신 기술발전 및 시장의 다양화로 민간의 전문성과 민첩성을 활용한 민간표준화 강화를 통해서 글로벌 표준 전쟁 대응 필요

○ 방송통신 분야의 민간표준화 단체의 육성·지원을 통한 단체표준 수준 제고 및 상향식 표준화 추진

- 방송통신 표준화 중기계획 수립을 통한 단체표준 개발

- 방송통신 분야별 표준화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표준화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결집 및 표준 전문성 확보

* TTA 위원회 운영 현황 : 71개 위원회, 190여개사, 4,600여명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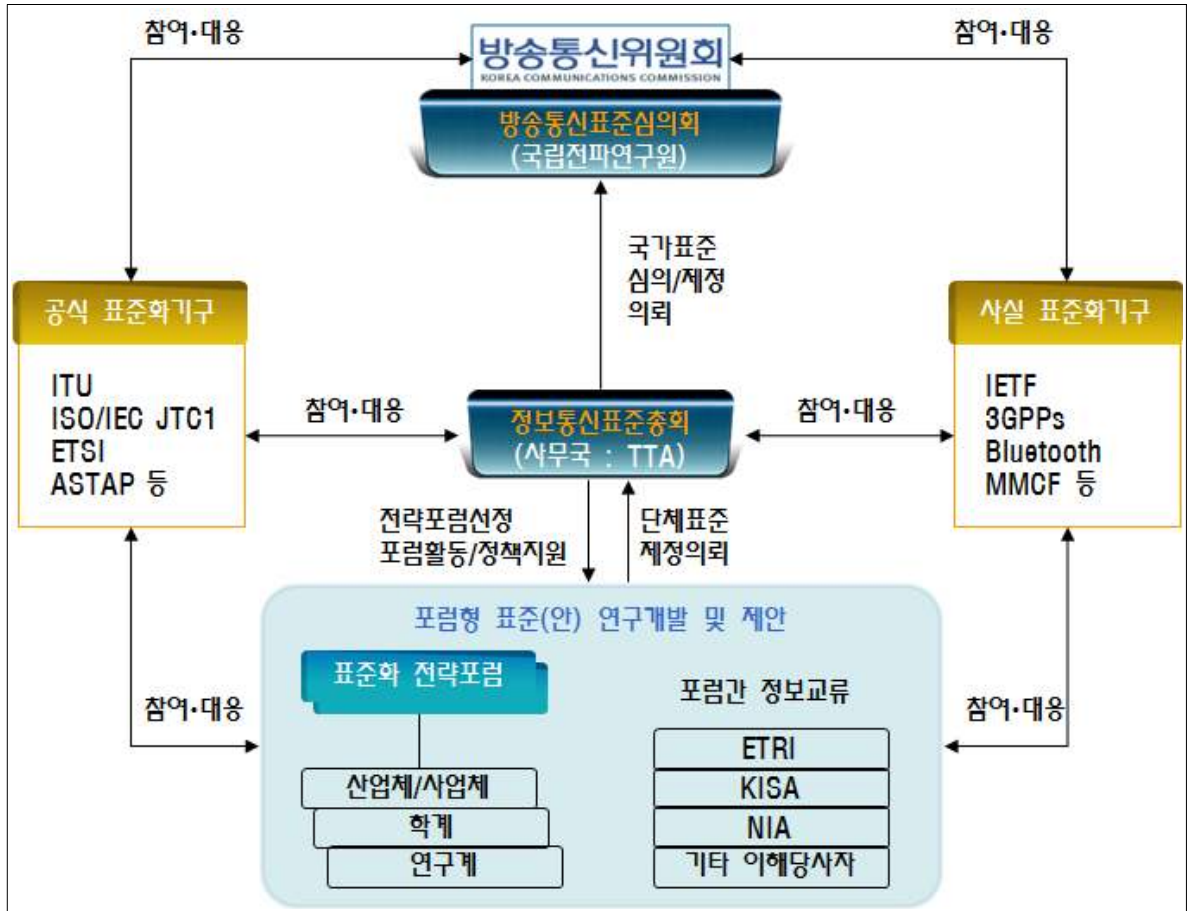
○ 방송통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국어순화·표준화 및 보급·확산

- 방송통신 신규 표제어 및 삽화 수집, 신규 용어 집필 및 선정

- 방송통신용어 분과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방송통신용어사전 및 CD-ROM 제작·보급

□ 추진체계



□ 추진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 15. (생략)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

제34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① 정보통신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정보통신 기술 지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기술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

사업 2 방송통신분야 전략포럼 발굴·지원

□ 사업 목적

- 민간 포럼 육성을 통해 산업체 중심의 표준화 활동 유도
- 국내 민간 기술 개발 유도 및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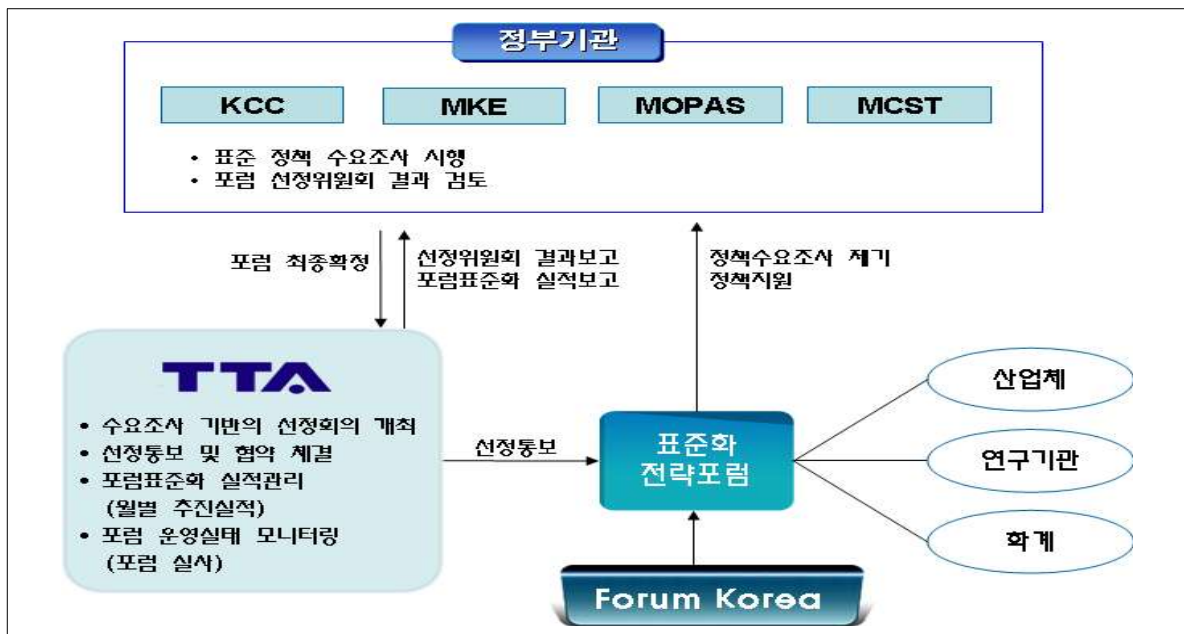
< 사업추진 필요성 >

◇ 방송통신분야의 급속한 기술발전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상향식 표준화가 필요

- 방송통신 표준화 포럼의 전략적 선정·지원 체계 구축
 - 미래 서비스 전략 분야 등 중점 표준화 지원 분야 선정·지원

- 핵심 분야별 표준화 전략포럼의 사실표준 제정 활성화
 - 표준화 포럼 지원을 통해 시장 요구를 반영한 포럼 표준 발굴
 - 국내 핵심기술 및 서비스의 국제표준화 추진
-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 논의의 장을 제공하여 민간중심의 표준화 체제 강화
 - ICT Forum Korea 개최로 국내 포럼 활동 및 최신 국내의 표준화 기술 이슈 홍보

□ 추진체계



□ 추진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 15. (생략)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

제34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① 정보통신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정보통신 기술 지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기술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

사업 3 방송통신분야 표준전문가 양성

□ 사업 목적

- 국제표준화 회의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과 실무적 소양 함양
- 중소기업 방문·자문서비스를 통한 방송통신분야 표준화 전문가 양성 및 표준기술 활용 활성화
- 국내외 방송통신 표준 기술의 보급을 통한 산업계의 표준 기술 활용 활성화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필요성 >

- ◇ 방송통신 표준화 전문가의 지속적인 육성 강화는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산업체 경쟁력의 원천
- ◇ 국내외 방송통신 표준기술의 보급과 홍보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산업체 경쟁력 원천인 표준화 인식 제고

-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국제표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과정 실시
 - 전문과정 실시에 따른 전문가 활동 가이드라인 개발
- 표준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표준 자문서비스 추진
 - 국제표준화전문가의 중소기업 방문·표준화 상담
 - 최신 표준화기술 및 표준화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제공
- 방송통신표준 기술 교육·세미나
 - 주요 표준의 상세한 설명을 통한 기술 이해도 증진 및 표준 활용도 제고

□ 추진체계



□ 추진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 15. (생략)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

제34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① 정보통신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정보통신 기술 지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기술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

3. 연도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 1 방송통신 분야 민간표준화 활동 강화

세부사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개발		432종 ↔	435종 ↔		430여종 ↔
표준용어 심의·채택		113어 ↔	110어 ↔		110여어 ↔	/년 ↔

사업 2 방송통신분야 전략포럼 발굴·지원

세부사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ICT표준화 포럼 선정·지원		38개 ↔	30개 ↔	30개 ↔	30개 ↔
포럼 표준(안) 발굴		208개 ↔	200개 ↔	200개 ↔	200개 ↔	200개 ↔
ICT Forum Korea 개최		1회 ↔	1회 ↔	1회 ↔	1회 ↔	1회 ↔

사업 3 방송통신분야 표준전문가 양성

세부사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국제표준 전문가 양성교육		3회 ↔	3회 ↔	3회 ↔	3회 ↔
기술표준 자문서비스		61회 ↔	50회 ↔	50회 ↔	50회 ↔	50회/년 ↔
방송통신표준 교육/세미나		18회 ↔	15회 ↔	15회 ↔	15회 ↔	15회/년 ↔

□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세부사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민간표준화 활동 강화		2,750	2,750	2,750	2,750	2,750
전략포럼 발굴·지원		2,150	2,150	2,150	2,150	2,150	10,750
표준전문가 양성		225	225	225	225	225	1,125
총 계		5,125	5,125	5,125	5,125	5,125	25,625

4. 2011년도 추진실적

사업 1 방송통신 분야 민간표준화 활동 강화

□ 2011년도 추진 목표

- 국내 핵심기술 표준을 적기에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와 연계하여 국제표준에 반영

* ITU-T IPTV, NGN FG, IMT-advanced와 연계하여 표준화 추진

- 방송통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국어순화·표준화 및 보급·확산

□ 2011년도 추진 실적

-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개발 : 432종
- 방송통신표준용어 채택 : 110어

□ 평가

- 사회약자·국민안전 및 생활밀착형 표준 제정
 - 마우스 제스처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 표준, LTE 망에서 재난문자 서비스 표준 등
- 4G, 3DTV, IPTV 등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표준 제정
- 사이버정보전, SOMO(Smart Office, Mobile Office), 팜토셀 등 신규 방송통신용어 개발

사업 2 방송통신분야 전략포럼 발굴·지원

□ 2011년도 추진 목표

- 방송통신 분야 표준화 전략포럼 선정·지원 체계 구축
- 국외 포럼/컨소시엄 대응체계 구축 및 국제표준화 추진
- 국내 시장 요구를 반영한 포럼 표준 개발(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 유도)
-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 논의의 장을 제공하여 민간중심의 표준화 체제 강화

□ 2011년도 추진 실적

- 방송통신 분야 표준화 전략포럼 선정·지원 체계 구축 (38개)

- 민간 수요조사를 통해 시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포럼 선정 · 지원
- 유사분야 포럼을 통합하여 중복 방지 및 활동의 내실화 유도
- 핵심 분야별 표준화 전략포럼의 사실표준 개발 : 208건
- ICT Forum Korea 2011 공동 개최 (5월)

□ 평가

- 전략포럼은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의 미러 포럼 역할을 수행하며, 최신 기술 및 표준화 정보를 조기 입수, 국내 산업계 보급
- 시장 수요를 분석하여 신속한 표준화 과제 도출 및 포럼 표준안 개발

사업 3 방송통신분야 표준전문가 양성

□ 2011년도 추진 목표

- 국제표준화 전문가 육성 · 지원을 통해 국내외 기술의 국제 표준화 역량 강화
- 방송통신표준화 관련 교육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국내외 표준기술 산업계 활용 활성화

□ 2011년도 추진 실적

- 국제표준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 운영 : 3회

- 표준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표준 자문서비스 : 61회
- 국내외 방송통신기술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18회
- 방송통신표준 활용 실태 조사 및 분석 ('12.1월)

□ 평가

- 공식·사실 표준화기구 동향, 기고서 작성방법, 국제표준화 회의 진행방법 등 실무 중심의 국제표준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 국제표준 전문가가 직접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기술개발 및 표준화 애로사항 상담 및 표준화 자문
- 표준기술 세미나, 교육, 대학특강 등을 통하여 국내외 표준 기술 정보를 신속히 보급

5. 2012년도 추진계획

사업 1 방송통신 분야 민간표준화 활동 강화

□ 2012년도 추진 목표

- 국내 핵심기술 표준을 적기에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와 연계하여 국제표준에 반영

* ITU-T IPTV, NGN FG, IMT-advanced와 연계하여 표준화 추진

- 방송통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국어순화·표준화 및 보급·확산

□ 2012년도 추진 계획

-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개발 : 435종
- 방송통신표준용어 채택 : 110어

□ 2012년도 주요 추진일정

- 정보통신단체표준(TTAS)의 제정 : '12년 6월, 12월
- 방송통신용어 심의위원회 개최 : '12년 6월, 12월

사업 2 방송통신분야 전략포럼 발굴·지원

□ 2012년도 추진 목표

- 방송통신 분야 표준화 전략포럼 선정·지원 체계 구축
- 국외 포럼/컨소시엄 대응체계 구축 및 국제표준화 추진
- 국내 시장 요구를 반영한 포럼 표준 개발(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 유도)
-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 논의의 장을 제공하여 민간중심의 표준화 체제 강화

□ 2012년도 추진 계획

- 방송통신 분야 표준화 전략포럼 선정·지원 체계 구축 (30여개)

- 민간 수요조사를 통해 시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포럼 선정 · 지원
- 유사분야 포럼을 통합하여 중복 방지 및 활동의 내실화 유도
- 핵심 분야별 표준화 전략포럼의 사실표준 제정 활성화
- ICT Forum Korea 2011 공동 개최

□ 2012년도 주요 추진일정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 '12년 2월
- 전략 포럼 선정 및 협약 : '12년 3월
- ICT Forum Korea 2011 공동 개최 : '12년 5월
- 최종 평가 : '13년 1월

사업 3 방송통신분야 표준전문가 양성

□ 2012년도 추진 목표

- 국제표준화 전문가 육성 · 지원을 통해 국내외 기술의 국제 표준화 역량 강화
- 방송통신표준화 관련 교육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국내외 표준기술 산업계 활용 활성화

□ 2012년도 추진 계획

- 국제표준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 운영 : 3회

- 표준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표준 자문서비스 : 50회
- 국내외 방송통신기술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연 15회
- 방송통신표준 활용 실태 조사 및 분석

□ 2012년도 주요 추진일정

- 국제표준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 국제표준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 '12년 6월, 9월
- 방송통신기술 교육/세미나 : 연중 (15회)
- 방송통신표준활용 실태 조사 : '13년 1월

Ⅲ

기타사항

1. 과제별 담당자

과제 번호	과제명	소속	이름	전화	이메일	기타
1-①	신성장 원천기술 표준개발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녹색기술팀	정승원 사무관	02-750-2 192	woonsi m@kcc. go.kr	
1-②	원천기술 국제표준 선점	방송통신위원회 녹색기술팀	정승원 사무관	02-750-2 192	woonsi m@kcc. go.kr	
1-③	R&D - 표준화 연계 활성화	방송통신위원회 녹색기술팀	정승원 사무관	02-750-2 192	woonsi m@kcc. go.kr	
2-①	기업친화적 인증제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반팀	김동현 주무관	02-750-2 232	amrita0 0@kcc.g o.kr	
2-②	사용자 편의형 표준지원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석재호 연구사	02-710-6 592	jhseok@ kcc.go.k r	
3-①	생활공감형 · 서비 스 표준화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석재호 연구사	02-710-6 592	jhseok@ kcc.go.k r	
3-②	사회안전 · 보안표 준화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석재호 연구사	02-710-6 592	jhseok@ kcc.go.k r	
3-③	공공 · 행정표준화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석재호 연구사	02-710-6 592	jhseok@ kcc.go.k r	
4-①	선진형 표준체계 구현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석재호 연구사	02-710-6 592	jhseok@ kcc.go.k r	
4-②	민간 표준참여 향상	방송통신위원회 녹색기술팀	정승원 사무관	02-750-2 192	woonsi m@kcc. go.kr	

2. 유관기관 연락처

-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 : 02-710-655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02-2142-2222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031-724-0114

3. 관련 사이트

- 방송통신위원회 www.kcc.go.kr
-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www.korpa.or.kr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www.tta.or.kr

4. 관련부처 및 협조 요청사항